창립 60주년 since 1956
201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주년을 향하여

# 가정상담

2016 2

통권 390호

ISSN1227-756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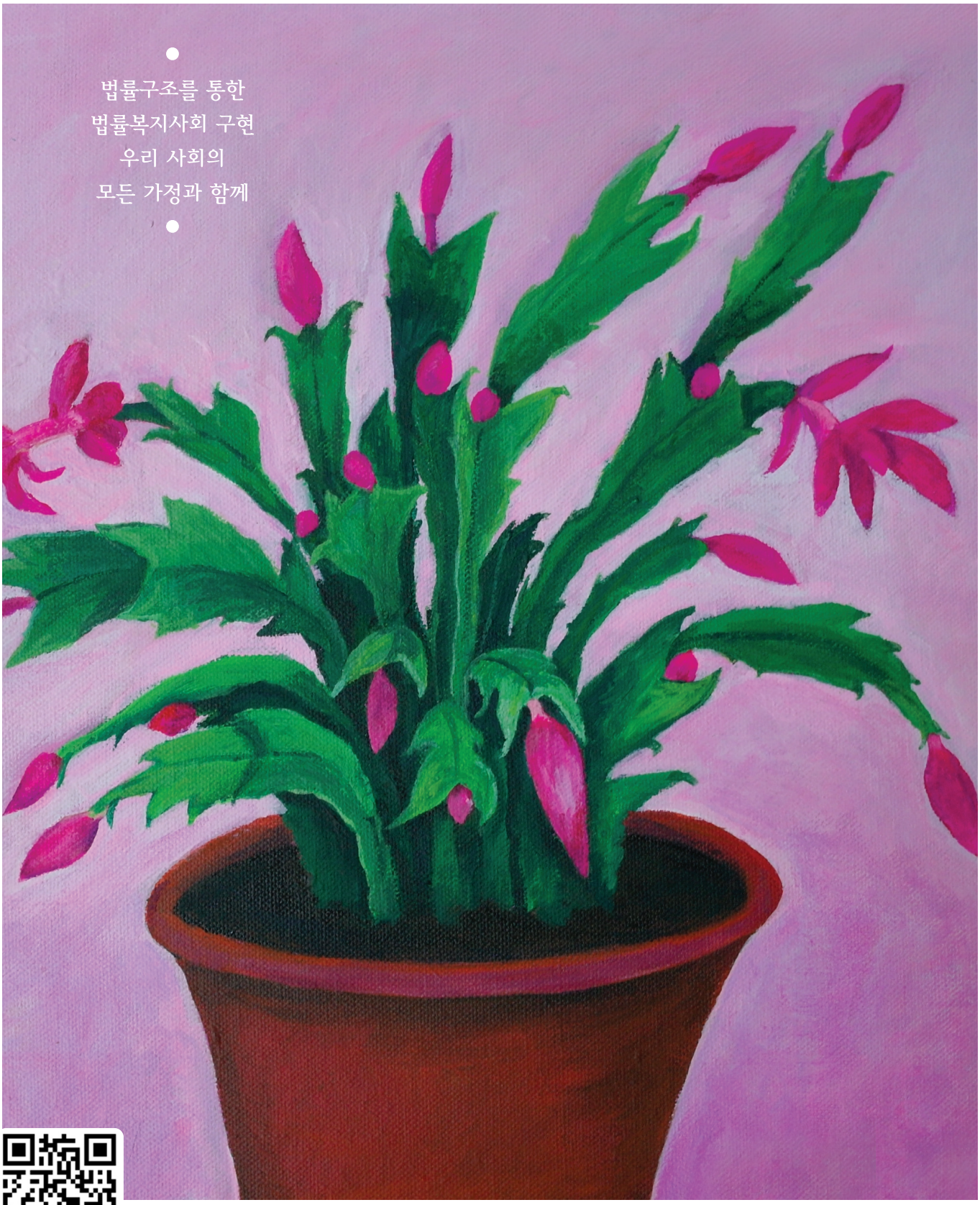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난 1월 8일 본소 강당에서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관련기사 29면)

말레이시아 가사 분쟁 조정 연구팀 1월 26일 본소를 방문하였다.(관련기사 30면)

4 •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6 • 특집 Ⅰ |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 • 특집 Ⅱ |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1

10 • 특집 Ⅲ |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강연

15 • 가정폭력상담실

19 • 소송구조

24 • 임상실습소감문

26 • 결혼과 인생(156) 영화 이야기
캐롤 _ 김용언

28 • 인터넷 상담

29 • 상담소 소식

32 • 지부소식

33 • 상담통계

34 • 좋은 책
도올의 중국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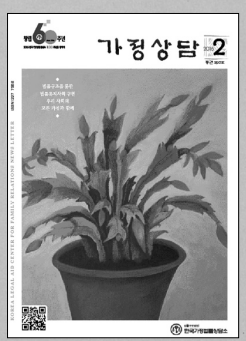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6. 2.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 이 달의 메시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 자랑스러운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올해는 상담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56년 상담소가 처음 문을 열고 시작하여  이리 저리 결방살이로 떠돌다 한강 옆에 자리 잡은 지도 어언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세상일에 미혹됨이 없다는 불혹을 넘어, 하늘이 내린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도 지나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듣게 된다는 이순의 나이에 이른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담소의 사람은 언젠가 모두 바뀌겠지만 상담소는 앞으로도 백년 이백년 가정, 가족이 있고 번민하는 이웃들이 있는 한 영원할 것이기에 저와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면서 상담소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소는 지금 평온해 보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강의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2007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을 지을 때, 상담소를 찾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잠시라도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해답을 찾으며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란 저희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고통과 번뇌가 모두 이곳에 있

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의 기로에 선 부부 · 가족갈등, 가정폭력 등 겉으로 보이는 가정문제의 양상은 상담소가 처음 문을 열었던 60년 전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해가 갈수록 그 내용은 더 심각해지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개인의 의식과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같아도 그 안의 흐름은 훨씬 강렬하고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렇듯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앞에 서 있는 내담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날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가정과 가족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구성원 간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로 인해 뉴스를 보는 것이 겁이 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와 직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담소의 역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책임감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더욱 내담자를 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매일 다짐합니다.

이렇게 상담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특별히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지내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축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상담소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되새겨보면서 더 없이 충실한 사회적 자산으로 더 넓고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안으로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상담소 창설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헌신을 다짐하며, 밖으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가짐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통해 그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상담소의 목적 사업인 법률구조 활동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변을 확대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상담소 6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와 직원들은 그간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상담소를 위해 애써 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저와 직원들은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통 받는 이웃들, 소외계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소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회원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 모두가 앞으로도 상담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월은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창립 60주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 준비하면서 동시에 상담소 모든 사업에도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

2016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상담소는 지난 역사를 기반으로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미즈넷 등의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출장 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활성화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연구 · 출판 · 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5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16년도 사업계획을 요약 · 정리 하였다.

## 법률구조 사업

###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미즈넷 법률상담의 내실화와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의 확대, 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을 비롯. 법원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 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 계속 진행.

###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둥지교실, 음주문제 상담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임.

###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

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가족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며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정폭력, 법개정운동 등의 변화된 양상과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임.

## 지부설치 및 지원사업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부를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부 실습생 지도, 지부 소장 간담회와 임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상담의 질적 제고 및 지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부 순회 점검 및 상담 및 통계 프로그램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국지부대회 개최 예정임.

## 교육 및 예방 · 치료사업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사법연수원생 상담봉사,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임.

## 조사 · 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 · 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

## 출판 · 홍보 사업

2015 개정 가족법 홍보 리플릿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 특히 창립 60주년을 맞아 가족법 상담 사례집인 「어떻게 할까요」의 특별판을 발행하고 상담소의 60년 역사를 살펴볼 특별 홍보책자 발간 예정임.

## 전산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 · 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

특히 상담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1*

# 법학개론과 이불장사

전 효 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교수님, 어떻게 해야 법학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제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원칙론 외에 가끔 나의 대학시절 특별하게 기억에 남은 법학개론 강의 경험을 들려준다.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에 입학한 나는 당시 학장으로 재직하시던 이태영 선생님의 법학개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고 법학교수이신 선생님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 내내 교과서에 있는 법률이론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학생들에게 숙제로 교과서의 내용을 노트에 손수 써서 제출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는 주로 당신이 살아온 삶과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과 어느 성우보다 더 화려한 언변은 한 학기 내내 학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학생들은, 이화여전을 수석 졸업한 신여성이 남편의 옥바라지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잘 들지 않는 가위 하나로 이불장사를 하시던 이야기를 듣고 가혹한 삶의 무게를 견뎌내신 용기에 감탄하였다. 부군께서 출옥하신 후, 선생님께 서울법대 진학을 권유하시고, 고시공부 하는 동안 아이들을 업어 키우며 돌보아 주셨다는 부분에서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신 것을 부러워하였다. 선생님께서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판사 임명을 신청하였으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자,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워 핍박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대목에서는 숙연해졌다.

"네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선생님께서는 강의 시간 말미에 이렇게 강조하셨다. 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그 벽을 뚫어서라도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며 모든 난관을 극복해 오시는 동안 생활신조로 간직해 오신 이 말씀은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었던 한마디다. 아직 남존여비의 관념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 여성으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법조인으로, 교육자로, 여성운동가로 성장하기까지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 자체가 훌륭한 여성법 교재였고, 학생들에게 여성과 인권에

* 본소에서는 2014년 6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담긴 각계 인사들의 추모의 글을 연재한다.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첫 학기가 끝날 무렵 나는 법률용어와 법체계를 어느 정도 깨우칠 수 있었고, 스스로 쓴 강의 노트는 어느 책보다도 소중한 학습자료가 되었다. 교수가 추려 준 중요한 요점만을 암기하고 시험요령만을 알고자 하는 요즈음 학생들에게, 나는 선생님의 법학개론 교수법에 따라,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스스로 공부하고 기본에 충실할 것을 권유한다. 또,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하거나 중도포기하려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여건을 탓하기보다 극복하는 자세를 가지라며,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좌우명을 들려준다.

내가 선생님의 존함을 처음 들은 것은 고3 때였다.

대학입시 공부에 지쳐 가던 어느 여름날, 입시상담을 맡고 계시던 정 선생님께서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다녀오신 후 나를 부르셨다.

"너, 이화여대 법학과에 가거라.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학장님께서, 고시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던 나는,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사법시험 준비라는 고난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학 입학 후 강의 시간과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선생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국은 암담하고 어수선했으며, 학교 문은 자주 닫혔다. 선생님께서는 1971년 초 홀연 정계에 입문하면서 학교를 떠나셨다.

"여러분 나는 정치 할려고 간 게 아니오. 이 가슴에 맺힌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에 간 것이오. …… 남자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여성이 먼저 깨우쳐서 그 위력을 남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에 교단을 떠난 것이오."

마지막 수업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던 선생님도 우셨고 학생들도 울었다.

선생님께서는 만년에 치매로 고생하시던 중에도 여러 행사장에 가끔 나타나셨는데,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 여성과 인권, 가족법 개정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다. 선생님께서는 1952년부터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열정은 여성운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셨다.

마침내 국회는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생님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시작한 지 53년 만이었다. 법조인생 전부를 바친 운동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선생님께서 1998년 일찍 작고하신 것이 못내 아쉽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 민법개정안 통과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2005년 2월 3일 호주제 규정인 민법 제781조 1항 및 제77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때, 헌법재판관으로서 관여한 것뿐이니 선생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선생님은 생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중에서도 1956년 '법과 인습에 눌려 우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법률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를 세운 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 상담소는 후에 가족법 관련 상담과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등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이화여대 법학과 학생들에게는 그곳에 가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진정한 산교육의 장이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법률구조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근래에는 법조인들이 공익봉사를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고 유수한 법무법인들도 공익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법조인의 참다운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여성법률상담소를 열 당시에는 공익봉사나 법률구조는 국가나 어느 단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인데, 개인의 힘으로 그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100년 전에 이 땅에 그러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세월이 흘러 여성을 옭아매던 인습의 굴레는 헐거워졌고,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절반에 가까우며,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달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 경제, 사회의 상층부 정책결정 직위에는 여성이 드물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는 힘들다. 남성의 역차별론이 오히려 힘을 얻는 요즈음, 여학생들에게 내가 전에 사회에서 겪은 차별대우를 말하는 것은 배고픔 없이 풍요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약발이 떨어진다.

이러한 시대에 선생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어떠한 해법을 내놓으실까?

새삼 선생님의 큰 가르침이 그리워진다.

특별기고 ③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강연**

#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보편적 가치들


**송 상 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지금 소개받은 송상현입니다. 우선 한 선구자가 뿌린 씨가 60년의 시간을 경과 하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하고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신 곽배희 소장님 이하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의 리더십을 칭송을 하면서,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제 강의를 펼쳐 볼까 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이 귀중한 기회를 이용하여 빠르게 변해가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같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국제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가 빨리 변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 세계는 디지털사회로의 빠른 이행, 냉전종식 후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의 구조적 변혁, 여행의 자유화, 사고방식의 파격적 개방 및 유연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 형성 등으로 인하여 아주 눈부시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200여 년 전의 산업혁명이나 최근의 주요한 기술적 발명보다 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요동치는 변화 속에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의를 통하여 세계평화와 발전을 이룩하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재판관 및 소장으로서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해보니 반갑고 편안한 마음이 들지만 답답한 심정도 없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외면한 채 주로 소위 먹방을 즐기는가 하면 옆나라 대국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서 우리끼리만 폐쇄적 담론에 빠져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경직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유연하고 창의적 분위기 속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새 아이

** 지난 1월 8일 본소 강당에서 열린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의 특강내용

디어와 패러다임과 담론들이 수년간 많은 국제적 토론을 거쳐 인류생활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이나 '법의 지배' 및 '정의를 통한 항구적 평화' 등은 아주 오래된 보편적 원칙이긴 하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이후 그 외포와 내연이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제69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117개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들은 2015년 이후의 변천하는 개발의안과 그 이행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 번 법의 지배와 good governance와 인권존중의 증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는 2000년에 채택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이후 좀더 보편적이고 강력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을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고위층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할 새로운 발전목표(SDGs)로서 17개의 기본원칙과 169개의 세부목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최근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의 37%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빠른 변화를 모르고는 지구촌 한마당의 구성원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등장한 몇 가지 보편적 가치를 관심 있게 받아들여 우리가 다같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권리와 책무를 다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보편적 가치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눈앞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접 좌우하거나 당장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장기적, 근본적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Human Rights)입니다. 人權은 우리에게 낯익은 단어인데 주로 독재시대의 탄압에 저항하던 많은 민주투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저항권적 인권에서 복지적 인권개념으로 슬쩍 말로만 넘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인권은 단순히 독재정권의 반기본권적 횡포에 저항하는 개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나열된 모든 기본권의 밑바탕을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의 총체적, 포괄적 개념입니다.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을 때 이 행사를 준비하는 화란 외무부는 참석한 국가원수에게 줄 간단한 선물로서 제3세계에서 만든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제조과정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면서 만들어진 물건인지를 가려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미 유럽에서는 솔선수범하여 공정무역커피 (fair trade coffee)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무역커피란 원산지의 커피농장에서 상품판매대에 오를 때까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체의 착취 없이 생산된 커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의 건강권을 위하여 농약을 안 뿌린 유기농 식품을 찾는 분은 많이 계셔도 커피농장 근로자의 인권을 생각하여 공정무역커피만을 마신다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예로서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는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의 의혹보다도 축구경기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네팔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제적 비난으로 개최지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이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논의도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GMO수입국가입니다. 이처럼 인권은 그 개념과 가치가 국제화 보편화되는 일방 모든 면에서 우리 생활의 각 방면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정부나 기업은 물론 NGO 기타 개인들까지도 이를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일상생활 속의 가치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인권존중을 사내 규범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실시적용하고 있는지는 전연 다른 문제입니다. 또 국방부가 뒤늦게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내 인권규범을 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나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군부대내의 인권문제는 특히 국가별 인권리포트에서 최근에 한국이 국제적

으로 뼈아프게 지적받은 사항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각 대륙마다 오래 전부터 인권법원이 창설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관할하면서 금자탑적 판례를 내고 있고, 남북미주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인권법원을 창설하여 인권침해문제를 司法的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만은 인권법원을 창설한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2004년 방콕의 아시아 태평양지역NGO모임에서 강하게 제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넓디넓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오로지 외형적 경제발전에 관한 과장된 선전용어만 경쟁적으로 난무할 뿐 그늘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체계적 움직임은 드문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이후 근 70년 동안, 특히 냉전 종료 이후로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 정부나 기업이 어떠한 사소한 국내외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인권 측면의 함의를 무시한 채 언행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처럼 섹시하고도 팔방미인적으로 요긴한 주제가 없건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의 개인적 이해 관계를 따질 때에나 주로 인권을 방패로 사용하여 목청을 높힐 뿐 인권이야말로 모든 국가정책의 근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 5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이 두 나라의 대통령에게 왜 그들의 외교정책의 제1순위가 인권인가를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불과 20여년 전 소련의 압제에서 벗어난 쓰라린 과거 경험을 통하여 인권보다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근본가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북한과 비교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더욱 인권을 대내외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이를 천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동안 배출된 해외 유학생도 많건만 인권을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국내외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라는 화두입니다. 유엔은 2012년 9월 제67차 유엔총회에서는 "국내외 차원에서 법의 지배에 관한 유엔총회의 고위층선언"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 결의에 따른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모든 국가가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첫머리에서 다시 국제적 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 인권(Human Rights) 및 발전(Development) 등 세 가지 목표의 달성에 법의 지배가 얼마나 긴요한가를 지적하고 각 국가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혁은 반드시 법의 지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모든 행동에 예측가능성, 안정성 및 적법성을 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는 국가 간의 우호적이고 형평적인 관계의 토대인 동시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삼는 경우에도 건강한 사회와 good governance를 확보하기 위한 정의와 법의 지배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외국의 투자유치도 어렵고 애써 이룩한 경제발전마저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제형사정의를 통한 항구적 평화 (Sustainable Peace through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확보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의과정을 보면 正義와 平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심지어 간신히 이룩한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정의라는 견해마저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오랜 내전이나 인명살상을 겪은 나라들이 안정을 찾고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Transitional Justice)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南阿共의 경우처럼 眞實和解委員會를 도입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르완다처럼 그 나라에 고유한 재래식 분쟁해결방식 또는 전통적 가차차 법원(Gaçaça Court)을 되살려 그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과거사를 정리하는 한가지 사후구제적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성된 평화는 잠정적이고 취약한 것이어서 언제 붕괴될지 불안하기만 하므로 이런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내외적 사법시스템(법원 검찰)이 평화파괴범을 처벌하여 정의를 확실

하게 구현할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의와 평화는 서로 손잡고 균형있게 작용해야만 지속적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점차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의를 통한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2002년 영구상설의 國際刑事裁判所(ICC)를 창설한 것이 가장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는 사법적 정의 없이는 항구적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범죄 중 전쟁,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및 침략 등 4가지 反平和犯罪를 새로 창설한 ICC의 관할에 맡겨서 이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ICC를 중심으로 새로 탄생한 거대한 국제형사사법시스템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은 123개 회원국의 국내 사법시스템 (법원, 검찰, 경찰 등)을 망라하고 이에 더하여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EU, AU, OAS, The Commonwealth 나 La Francophonie 와 같은 지역기구는 물론 Amnesty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 Human Rights Watch 등과 같은 NGO등도 적극 참여하는 실로 광범위한 신규 복합 사법체제입니다. 즉 ICC는 이처럼 마치 커다란 직소퍼즐과 같이 새로 구성된 국제형사정의시스템의 중심적 위치에서 이들 각 구성기관과 협동으로 극악무도한 평화파괴범을 처단하여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를 세우는 형사법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를 실현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입니다. 그리하여 ICC는 궁극적으로 일벌백계 (big fish)를 통하여 억지효과(deterrence effect)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만 회원국의 국내사법시스템이 일차적으로 수사와 처벌의 전책임을 지고 ICC는 보충적, 2차적으로 개입하는 ICC체제하에서는 각 회원국의 사법현실과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수준상의 차이가 크므로 ICC가 해당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 개입할 경우도 많고 각국의 사법 시스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방법이 줄기차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국제개발기구들의 지원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들은 아직까지는 이 점을 간과한 채 주로 직접적 퍼주기 경제원조를 하는 데에만 집중해왔을 뿐 사법부나 경찰 등 법집행기구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ICC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인류의 인권, 정의 및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사법기구로 부상하면서 이제 형사정의 없이는 항구적 평화가 없고 형사정의 없이는 모든 경제사회발전도 무용하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ICC는 유엔의 두 가지 분쟁해결수단인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안보리의 집단안보체제와 상호 보완하면서 좀 더 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제정의를 통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Sipal 법무장관은 ICC는 유엔 창설이후 인간의 두뇌에 의한 최고 최대의 발명이라고 찬양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화두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출간된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중규모의 개도국이 내전으로 인하여 입는 평균피해액은 30년간의 그 나라의 국민소득성장과 맞먹고 보통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ICC에 의한 정의의 실현은 안정적 평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점차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응보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부당면책(Impunity)만 계속되면 경제사회발전은커녕 피해자 측의 복수심을 유발하여 끊임없는 충돌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원조 이전에 과거의 잔학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책임추궁을 하여 일단 법의 지배의 기초를 닦는 것이 전쟁을 겪은 사회가 다시 빨리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기구들과 ICC등 국제정의기구들도 모두 전쟁 등 국제법 위반의 폭력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잘 알고 있고, 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간들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데 목표가 일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양대 기구들이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부패, 조직범죄 등 개발 프로그램이 당면한 애로를 극복하고 형사정의를 실현해나가야만 전쟁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서로 동의합니다. 이처럼 성공적 폭력 예방과 경제사회회복은 평화,

안전, 정의 및 경제적 발전의 기조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군사적 방법만으로, 또는 형사정의에 의한 방법만으로, 또는 개발지원을 통한 방법 한가지만으로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의 경우에는 물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정의를 통한 책임추궁(accountability)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괴 개인의 처벌이라는 기초적 형사정의의 실현만으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가 충돌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움을 간파하고 ICC는 피해자의 존엄과 능력을 회복해주기 위하여 두 가지 혁신적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함으로써 한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둘째는 피해자신탁기금 (Trust Fund for Victims)을 창설하여 광범위한 구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속적 의료봉사 및 직업훈련 이외에도, 사지절단 피해자를 위한 의수족의 제작지원, 강간피해자를 위한 지속적 심리상담, 어린이를 위한 공동체 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평화교육, 생업정착을 위한 미소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ICC의 피해자 프로그램은 결국 개인적 형사책임추궁의 원칙[正義]과 내란으로 파괴된 사회에 발전적 도움을 주려는 국제사회의 지원[經濟發展]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직접 수혜자는 11만 명이 넘는데 금년에는 그 숫자가 배가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점점 축소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상, 종교, 문화, 언어, 규범의식,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가진 인간들이 지구촌 한마당에서 서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법의 지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한국인이 뛰어들 수 있는 황금어장이 이처럼 눈앞에 펼쳐져서 꿈 많은 한국인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전체주의의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 및 소비에트의 스탈린 체제,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독재의 상처까지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가 준 트라우마는 인간의 이성에 관한 깊은 회의를 낳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의 독립과 권리의 신장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전체제의 붕괴로 자유로운 사고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자 지난 25년간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사상체계가 눈부시게 등장하여 우리의 열린 사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지구의 허파가 어딥니까? 아마존하고 인도네시아 밀림이죠. 그런데 그 밀림이 급속하게 없어져요. 허파가 없어지면 이산화탄소 37% 어떻게 감축할거에요? 무슨 짓이 일어나느냐. 열대우림을 몰래 불법으로 베어버리죠 그리고 불을 질러서 나무 밑동이 없애버리고 그것을 밭을 만들어서 코코넛을 심어요. 코코넛 농장의 면적이 넓어지죠. 코코넛이 기름을 짜면 화장품, 식용, 공업용 등으로 많은 용도에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벌이에 눈이 멀어서 밀림을 다 베어버려요. 그러면 지구의 허파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다하다 못해서 지금 업자들끼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코코넛 오일 생산 제조하는 업자들끼리 라운드를 만들어서 코코넛 오일 전부 완제품을 검사를 해서 밀림을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농장을 새로 만들어서 불법으로 코코넛을 심어서 만든 기름인지 원래 정상으로 있는 코코넛 농장에서 만든 기름인지 구별을 합니다 그렇게 남벌해서 나온 기름은 인정을 안 해주고 제대로 생산된 코코넛 오일만 인정을 해주고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막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을 원통에 들어있는 것을 사서 보면 35buy-round 적혀있는 것은 제대로 된 코코넛 오일 농장에서 나온 것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열대우림을 베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온 코코넛 오일인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이신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의식이 드셔가지고 관심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변해도 아주 크게 변해서 자유롭고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의 선도자인 여러분이 국제화의 역군으로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모자 갈등이 자녀 폭행으로 이어져, 폭력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졌으나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기도

사건번호 2015형 제****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상담진행

가해자(남편) 개별상담 10회,
가해자(아내) 개별상담 5회, 자조모임 4회,
집단상담 2회, 교육강좌 1회 등
총 22회 실시

## 상담기간

2015. 5. 8. ~ 2015. 10. 15.

##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1남(18세, 14세)이 있다. 부부가 함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툼 끝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부부 함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10회, 20시간)으로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어머니가 사건 발생 3달 전부터 집에 와 계셨고, 사건 당일 부부의 폭력사건을 친정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 사건 이후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남편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별도로 상담을 받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상담에 임하기 전에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

남편은 본 사건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이혼 시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상담 욕구를 표출하였고, 아내와 마찬가지로 이혼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당부하고 부부 별도의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상담기간 중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내에게 이혼을 숙고하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아내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없고, 시가식구와의 갈등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는데, 수험생인 딸이 이혼을 강력히 권한 것도 이혼결심을 굳히는 요인이 되었다.

상담종결 시 부부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와 조정을 거쳐 변론이 진행 중인 상태

였다.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자녀문제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아내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함), 다툼이 되는 것은 학원 청산과 관련한 재산분할이었는데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다. 부부 모두 숙고 끝에 이혼을 결정하였으므로 선택에 대한 책임과 자녀 양육에서의 협력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사건번호 2015버5**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어머니) 개별상담 4회, 집단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자조모임 1회, 교육강좌 2회
피해자(아들) 전화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 상담기간

2015.5.14.~2015.11.13.

#### 상담경과

행위자(어머니)는 결혼한 지 31년 되었으며, 배우자와의 사이에 1남 1녀(30세,26세)가 있다. 행위자는 이전부터 피해자(아들)의 진로문제 및 이성교제문제로 갈등이 있던 차에 모자간에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기물파손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접근금지 처분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상담초기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 이후 연락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모자갈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접근금지 처분으로 인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모자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상담을 받으면서 행위자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언행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전의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그 동안의 모자갈등 원인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성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또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섣불리 관계회복을 시도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감정보다 피해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생업 때문에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행위자의 언행으로 그 동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위자와의 관계 회복을 거부하였다.

행위자가 자신도 모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서두르지 않고 모자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은 상담의 성과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사건번호 2015버2**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집단상담 2회, 전화상담 7회
피해자(남편) 전화상담 1회 등 총 12회 실시

#### 상담기간

2015.5.21.~2015.11.20.

#### 상담경과

행위자(아내)는 피해자(남편)와 결혼한 지 17년 되었고, 부부사이에 1녀(17세)가 있다. 행위자는 경제갈등과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

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본 사건 이전부터 경제갈등과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인해 이미 부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으며, 행위자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본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력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을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신만 상담위탁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도 행위자가 처벌을 받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행위자가 너무 흥분해있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전에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고 행위자가 그 후유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부부가 모두 이혼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으나, 행위자가 이전에 있었던 폭행의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과 극도의 심신쇠약상태를 호소하여 상담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 부부관계 회복 및 행위자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행위자가 진정되고 건강이 회복된 이후 본인도 상담을 받는 등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상담을 받으면서도 행위자는 이전에 있었던 폭행의 후유증과 신경쇠약으로 심한 우울감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부부가 별거하는 등 단시간 안에 부부관계가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도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고 행위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행위자도 이전에 비해 폭행이나 기물파손을 하지 않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부부관계도 상담받기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 사건번호 2015버1***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3회 등
총 27회

### 상담기간

2015.7.16.~2016.1.15.

### 상담경과

행위자(남편)는 피해자(아내)와 결혼한 지 24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3세,16세)가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종교활동을 집안일보다 우선시하고 친구들과 만나 자주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행위자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화가 나면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부부갈등이 있었으며, 행위자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후 부부갈등이 더 심화된 상태였다.

행위자는 생업으로 인해 집단상담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개별상담에 성실히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부부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전처럼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피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부부간에 충돌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안일

보다 종교활동을 우선시하는 점과 자주 친구들과 만나 밤늦게 귀가하는 점 등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행위자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피해자는 행위자가 직접적인 폭력은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부관계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위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담을 통해 행위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으며 이전보다 분노조절문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근본적인 관계 회복의지는 미흡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개별/부부/가족상담, 음주문제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부부/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교육횟수는 20회, 평균 교육 시간은 60시간이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라오니모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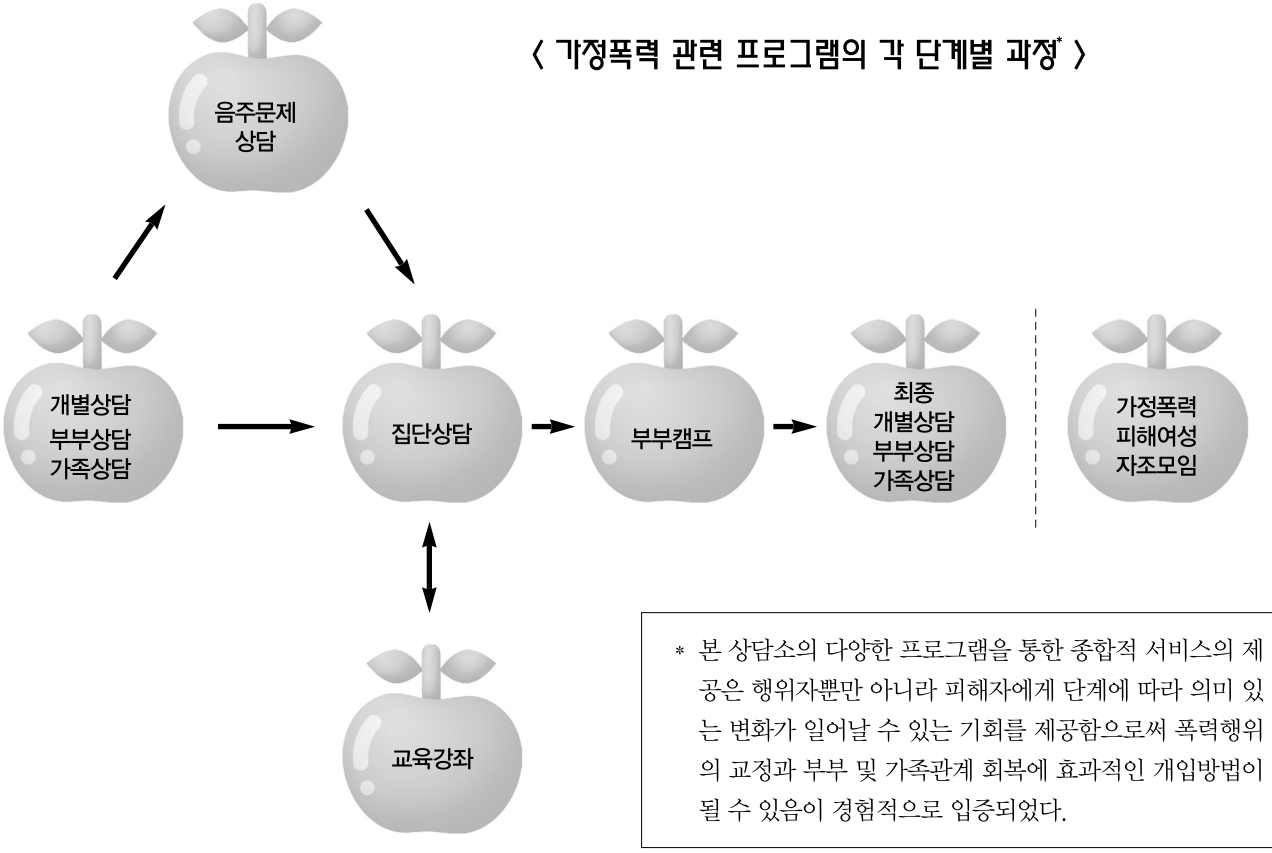


*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 소 • 송 • 구 • 조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도박과 폭력으로 가족을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5-16**

**담당 : 천정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1세)와 피고(남, 56세)는 1990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후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채 살아왔다. 원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홀로 힘겹게 자녀를 키워왔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 자녀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2014년 1월에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원고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도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4.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압류 및 추심 결정

**법률구조 2015-65**

**담당 : 양영화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0세)와 채무자(남, 41세)는 2001년 9월에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4세)을 두었지만, 2003년 5월 채권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2004년 4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무자가 지정되었으나, 채무자는 2003년 7월 사건본인을 채권자의 부모에게 맡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실제로는 채권자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 채권자의 부모는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휴대전화 개통, 급식 통장 발급 등을 할 수 없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채권자가 출소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할 때로 마찬가지였다. 이에 채권자는 2014년 본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채권자로 변경하고, 채무자로부터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3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로 매월 350,000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이행명령

**법률구조 2015-111**

**담당 : 강인영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슬하에 사건본인(남, 8세)를 두었으나, 2007년 피신청인의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이후 2008년 신청인은 본소로부터 법률구조를 받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8. 5.부터 2013. 2.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2013. 3.부터 2019. 2.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2019. 3.부터 2026. 9.까지는 월 500,0000원씩을 매월 26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8년 5월에 20만원을 지급한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한부모 가정으로 힘겹게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에,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 6.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느단***호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사건의 2008.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양육비 합계 7,9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이 고지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1,000,000원씩(마지막달 900,000원) 분할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라.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의 명의를도용하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5-125**

**담당 : 박지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9세)와 피고(남, 58세)는 1983년 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도박자금을 마련해오라고 원고를 협박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유용하여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는 자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체납하여 자녀가 통신사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연락을 받게 할 정도로 도박에 중독되어 지냈다. 또한 피고는 폭행과 폭언도 행사하였는데, 자녀들이 폭행을 피하여 방 안에 숨어있으면 망치 등으로 방문과 손잡이를 파손하고 소란을 일으켜 지구대에서 원고의 집으로 수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2012년 5월에는 자녀의 머리를 잡고 집안 곳곳을 끌고 다니는 등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폭행과 폭언을 참으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월 10만원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월 40만원으로 증액 판결

법률구조 2015-147

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남, 32세)와 상대방(여, 33세)은 2007년 5

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8세)를 두었지만, 2009년 10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09년 11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월 1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얻는 최저생계비정도의 소득으로 사건본인을 부양하였으나, 상대방은 2011년 8월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으며, 2015년 3월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청구인이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도 증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16.)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본소) 및 2009드단****(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 2009.10. 조정조서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 중 2015.11.1. 이후의 장래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심판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20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남편의 혼외자가 친자로 기록된 것을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15-151**

**담당 : 강창문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여, 44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75세)를 모로, 소외 김**을 부로 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김**과 1969년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은 채 소외 김**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 6개월 만에 별거하고, 1982년 협의이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최근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 김**의 혼외자로 소외 김**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모로 하여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인천지방법원 2015. 12. 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

**법률구조 2015-158**

**담당 : 박상복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5세)과 피신청인(남, 30세)은 2011년 8월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두었으나, 2014년 1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혼 후 요식업체 주방, 세탁 공장 등에서 근무하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마련해온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신청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3드단*****호 사건의 확정된 2014.1.2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6.1.12.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150만 원을 3회로 분할하여,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을 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

**법률구조 2015-171**

**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52세)은 199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22세, 18세)을 두었으나, 이후 2008년 10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조정조서의 내용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8년 10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각 금 400,000원씩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1. 2.)

피신청인은 이 법원 2***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5.9.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원을 분할하여 2015.12.부터 2016.9.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원씩을 지급하라.

##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남편에 대해 혼인 취소 판결

**법률구조 2015-289**

**담당 : 이종명 변호사**

**사건명 : 혼인의 취소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

**내용 :** 원고(여, 22세)와 피고(남, 27세)는 2012년 11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1월부터 함께 동거 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다. 2013년 12월부터 원고는 시댁에서 피고의 부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지만, 시댁식구와의 잦은 갈등으로 인하여 미혼모 시설로 나와 2014년 3월 혼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피고와 함께 양육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어, 2014년 10월 피고와 다시 만난 뒤 2015년 6월 피고와 혼인신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5년 6월에 이미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7월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원고는 만약 피고가 HIV라는 사실을 혼인 전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피고와의 혼인을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전가정법원 2015. 11. 25.)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6. 대전 **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른 여자와 동거 하며 40여년 간 별거한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법률구조 2015-300**

**담당 : 김수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7세)와 피고(남, 80세)는 1980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피고는 결혼 후 전기공으로 일을 하며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을 한 번 준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후부터 집을 나가 다른 여자들과 동거하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돈이 필요할 때만 집에 들어와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40년 이상을 별거하며 살고 있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0. 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결정

**법률구조 2015-309**

**담당 : 라은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 :**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43세,국적 중국)는 2006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1,2,3(남, 18세,10세,9세)을 두었다. 원고는 1998년경 소위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건너가 피고와 살게 되었고, 같은 해 사건본인 1을 출산하였다. 그 이후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원고에게 '얼마에 너를 데려왔는데 값을 못하냐, 말을 듣지 않으면 공안에 너를 신고하겠다.' 는 말을 하며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던 원고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멸감을 주었다. 2006년경 피고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원고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는 말을 하며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12월경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과일칼을 던졌으며, 이후 합의 하에 별거를 하였지만 다시 찾아와 원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0.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봉사 및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2016년 1월 4일부터 2주간 전문분야 실무수습 활동을 한 사법연수원 46기 연수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조 계 창**
사법연수원 46기

"내 이웃은 바로 만일 내가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돕지 못할 이 그가 바로 내 이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보낸 지난 2주는 내가 도와야할 번민하는 이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고민하는 가운데 잊고 지내었던 첫 마음을 떠올려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료 대서작업을 하면서 그간 배우지 못했던 가사 관련 소송서류들을 작성해 본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상담실 및 법원 출장 상담 참관 등을 하며 법률적인 해결방안의 제공은 물론이요 내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줌으로써 상처의 근원적인 해결에까지 나아가는 상담의 저력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법 개정사 등을 수강하며 가정을 지키고 약자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그 최전선에서 지난 60년간 고군분투 해온 상담소의 역할과 꺼지지 않는 그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을 오래도록 되새기며 나에게 맡겨진 번민하는 이웃을 위해 땀 흘리고 싶습니다.

**박 순 영**
사법연수원 46기

연수원에서는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 중 2주간 전문기관에서 실무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대학시절부터 여성학 강의 등을 통해 여성문제 혹은 가정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였고 다행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전화상담, 상담실참관, 대서작업 등을 통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값진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화상담과 상담실참관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위로가 법적지식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담위원님들의 상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련함과 세심함에 감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배움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법적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또한 상담소에는 이들을 돕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신 영

사법연수원 46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와서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전화상담, 상담참관, 대서작업, 가정법원 출장상담 참관, 강연 청취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실제 사례를 접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저에게는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의 일은 결국 사람의 일을 다루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항상 저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조인으로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에 치여 초심을 잃어버릴 때, 이곳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 변호사님들, 공익법무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사전 예약 필수

###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영화이야기

# 〈캐롤〉

감독 : 토드 헤인즈

출연 : 케이트 블란쳇, 루니 마라

1950년대 뉴욕, 크리스마스 무렵. 맨해튼 백화점의 장난감 가게 점원 테레즈(루니 마라)와 딸의 선물을 사러 온 캐롤(케이트 블란쳇)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다. 이혼을 앞둔 남편과 딸의 양육권을 두고 소송 중이던 부유한 여인 캐롤과, 소극적이고 순진한 소녀 테레즈는 서부로 여행을 떠나며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동성애, 특히 여성 간의 동성애가 죄악시되고 금기시되던 시절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스캔들이 된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캐롤〉은 많은 이들에게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리는 것은, 성소수자 내에서도 남성-게이와 여성-레즈비언으로 나뉠 때의 지점이다.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 다시 말해 자식에게(특히 딸에게) 모범적인 역할모델이 되기를 한꺼번에 요구받을 때,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시선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캐롤〉의 중심 갈등은 캐롤의 선택이다. 정숙한 아내가 되기를 포기 혹은 거절할 때 남편은 그 보복으로 공동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이 딸을 단독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잡한 동성애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테레즈는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자유롭다. 그녀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혼자 살며, 결혼을 준비하느라 좋은 일자리까지 구했다는 애인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다음에도 취직을 하여 자족적인 독립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녀는 캐롤보다 더 어리고 가난하지만, 그만큼 용감해질 수 있다. 반면 부유하고 거칠 것 없어보이던 캐롤은 그만큼 잃을 것이 많다. 부유한 남편 없이, 엄마 자격이 없다며 딸까지 빼앗긴 이후의 캐롤이 지금처럼 뉴욕의 상류사회에서 당당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번민에 시달리던 캐롤의 최후의 선택은, 레즈비언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더없이 우아하다. 그녀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면 딸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결단을 내린다.

영화의 또 다른 축인 테레즈의 변화도 인상적으로 다가

온다. 영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의 테레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전반부에서 그녀는 사진을 찍고 싶지만 좋은 카메라를 살 돈이 없고, 싸구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남에게 보여주기도 부끄러워한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의 직장을 찾아가지만 그녀가 원하는 직업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뜨거운 하룻밤을 원하는 듯한 남자의 제스처에, 최대한 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나는 원치 않는다' 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언제나 반응하는 쪽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을 원하는 애인의 구애에 그녀가 거절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이유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뭘 할 수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애매하게 표류하는 존재다. 하지만 캐롤과의 만남을 통해 테레즈는 "날 무서워하지 마"라며 성적 어필을 하려는 남자를 향해 정색하며 "난 무서워하지 않아"라고 대꾸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남편/애인이라는 곁에 있는 남성과의 '동행' 을 통해서만 안전함과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존 관념에서 어느새 자유로워진 테레즈는, '좋아, 그래' 라는 반응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선택하기를 '선택' 한다.

토드 헤인즈 감독의 2002년 작 〈파 프롬 헤븐〉은 역시 1950년대를 배경으로, 남편이 게이였음을 알게 되어 혼란에 빠진 백인 가정주부가 어느 샌가 흑인 정원사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야기를 다룬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스스로가 별나지(queer) 않다고 생각하며 몇 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불현듯 자신이 진짜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의 충격과 혼란.

토드 헤인즈는 1950년대라는 까마득한 과거를 소환하여 그 시대의 매너리즘과 장식적이리만치 깍듯한 규범과 예절의 틀을 통해, 그 매너리즘 바깥에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그 욕망이 '정상사회' 를 파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욕망이 파괴당하는 과정을 통해 거꾸로 그 욕망의 크나큼을, 스스로를 정상이라 믿는 사람들이 그 욕망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정교하게 그려냈다.

그리고 13년 만에 〈캐롤〉을 통해, 토드 헤인즈는 이성애자들의 결합만이 존재하는 듯 가장하는 우리 세계의 좁디좁은 관념을 다시금 통렬하게 깎아내린다. 현재 〈캐롤〉은 2016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등 총 6개 후보에 지명된 상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인터넷 상담

Q

저는 신축 중이던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이사를 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건물등기부등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차한 세대의 현관문과 편지함에 표시된 1층 201호를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차목적물로 표시하고, 전입신고도 위 임대차계약서의 표시대로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마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제가 임차한 부분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1층 101호로 등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돈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건축업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건물의 경매가 끝난 후 제가 제 임대차보증금을 건축업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를 한 때)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위 대항요건과 ③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건물이 경매될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위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 상담소 소식

##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지난 1월 8일 본소 강당에서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전국지부 임직원들과 본부 곽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 날 모임은 1부 특강과 만찬, 2부 신년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 곽배희 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상담소의 역사를 개괄하고 창설 당시 이태영 선생의 노력에 관한 일화를 통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담소 임직원들의 마음가짐과 각오를 짚어보도록 하였다.

이어 "우리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보편적 가치들"을 제목으로 송상현 박사(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의 강의가 있었다. 2부 신년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의 사회로 지부 운영 및 소송구조 사업 안내(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폭력관련 사업 안내(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통계프로그램, 부패방지교육, 성희롱예방교육(김진영 상담위원)등을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 · 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지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지부소장 · 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생략, 지부 가나다순임).

강릉지부 윤은소, 정미경, 김다희 / 구리?남양주지부 신영미, 전병화 /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 대구지부 유연희 소장, 이혜민, 홍상아 / 대전지부 조성남 / 동해지부 김혜동 소장, 서지희, 고명희, 김서정 / 부천지부 박미애, 황영숙 / 성남지부 유향순, 정진경, 박선화 / 수원지부 박윤선 소장, 권지연 / 순천지부 유숙영 소장 / 울산지부 김문옥 소장, 김흥숙, 공용자. 최덕선, 문지영 / 익산지부 김난희, 심운숙 / 인천지부 박희경 소장, 한현애, 송희원, 박원형, 이영미 / 전주지부 유순금, 김영수, 임균자 / 정읍지부 송경숙 소장, 송미경 / 제주지부 염순정 소장, 강유진, 윤은선 / 제천지부 권영애 소장, 이경미 /중구지부 제오복 소장, 양영재 / 진주지부 박말순, 박주연 / 창원 · 마산 서정희 소장 / 청주지부 홍종호 소장, 정복자, 윤예정 / 춘천지부 이명숙, 유정희 / 평택 · 안성지부 석현숙 / 포항지부 박해자 소장, 김경이, 김은경, 안명주 (관련 사진 2면)

## 말레이시아 가사 분쟁 조정 연구팀, 본소 방문

1월 26일 오후 2시 말레이시아에서 가사 분쟁의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이 본 상담소를 방문하였다. 방문한 연구팀은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Ahmad Ibrahim Kulliyyah of Laws의 Nora Abdul Hak, Najibah Mohd Zin, Roslina Che Soh, Noraini Md Hashim, Norliah Ibrahim 교수 5명과 조교 2명, 그리고 통역자 등이었다.

곽배희 소장의 주재 하에 동 연구팀은 한국에서의 가사분쟁유형, 해결방법 등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 및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관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상담소 내부를 돌아보았다. 당일 김원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같이 참석하였으며,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이 배석하였다. (관련 사진 2면)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지도교수 본소 방문해 곽배희 소장과 의견 나누기도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4주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실습이 본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소의 사회복지 임상실습은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을 통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개별상담 및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참관과 개입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임상사회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실습학생은 김민주(3학년) · 안중돈(3학년) · 최제일(4학년)이다. 실습기간 중인 1월 26일에는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 교수가 본소를 방문하여 곽배희 소장과 본소의 법률구조사업 취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교육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본소 실습지도자)과도 발전적인 실습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교육부, 교원직무연수 및 김병후 원장의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교육부에서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초 · 중 · 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가족법 개정사, 혼인, 이혼, 친 · 양자, 상속 · 유언, 부양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법률 및 성년후견제 등 가족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가정폭력특별법 및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수강생들은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거나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월 28일에는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 김병후 신경정신과)의 강의로 "부부갈등의 분석과 진단"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부부갈등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김정혜 자원봉사자, 제3회 등대문학상 대상 수상

시인이자 본소의 오랜 전화 자원봉사자인 김정혜 선생이 지난 2015년 12월 15일 제3회 등대문학상에서 '그 섬이 불렀다'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등대문학상은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후원한 것이다.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 여인상을 상징하는 시적 인물, 욕지댁을 주인공으로 작가의 삶과 생애가 진손하게 녹아 있으며 개인의 삶을 객관화하여 개연성을 획득한 솜씨가 뛰어나다' 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화여대 직장체험 연수 (1.4~2.26)
이명선, 이소윤, 이지원, 정서우

●동국대 법학과 현장실습 (12.22~2.5)
최경수, 서연지, 노인지, 심우봉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 (1.4~1.15)
조계창, 박신영, 박순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1.4~1.29)
김민주, 안중돈, 최제일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임채영 변호사, 박도민 공익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사건 등에 관한 조정을 하였으며. 25일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재산분할관련 외부전문가 세미나' 에 참석하여 토론발표를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월 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 ● ● ● 고맙습니다

### 2016년 1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한수자 선생님, 강종협, 곽성환, 김경민, 김미혜, 김지후, 김태주, 김형석, 박배연, 박수열, 박은정, 송명호, 여지은, 유정아, 장세호, 정수경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장주용, 방선영, 이승주, 장철진, 전성배, 정득성,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관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남보라, 이진실, 맹형규, 정주은, 이현지, 전승민, 유재혁, 양예지, 한승빈 님

###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천정환
안산에서(이름 밝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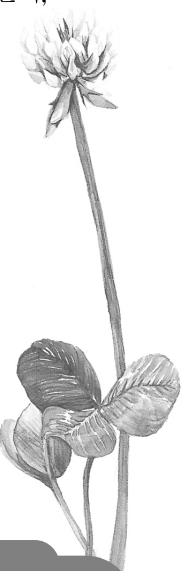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 지부소식

## 강릉지부

1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거제지부

1월 5일~29일 법원행위자상담 및 법원심화상담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총 15회). 진성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구리지부

이경숙, 정수경, 김효경, 정이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군산지부

1월 7일~28일 법원자녀양육교육, 법원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총 7회).

## 성남지부

1월 5일, 12일, 19일,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동출장삼당을 실시하였고,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총 13회, 총 90명)를 실시하였다.

##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협의이혼전 상담을 하였고, 강은혜, 공영서, 박지훈, 양승철, 이지원, 전태우, 차명심, 최성중, 최지희, 한두환, 한승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전주지부

1월 6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2일, 21일, 28일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실시하였다(총 27건). 강문원, 김흥면, 한대삼, 황인철, 박현민, 백신옥,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김세희, 강문숙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중구지부

서울가정법원 수탁 가정폭력가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 모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실시하였다. 김창건, 장상현, 박진석, 박정두, 노문기, 이수희, 박은정, 정형준, 이영주, 황은하, 여지은, 김영옥, 홍지혜, 장인영, 고승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창원 · 마산지부

1월 14일, 21일, 28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남상업, 오유경, 민태식, 강재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청주지부

12월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2015년 1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5년 12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219건으로 본부가 6,321건, 지부가 5,898건이었다.

본부는 5,679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57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98건 · 소송구조 87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57건 · 화해조정 671건 · 소장 등 서류작성 56건 · 소송구조 14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679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5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5%→3.1%), 이혼(21.1%→23.4%), 인지(0.7%→1.0%), 입양(1.2%→1.6%), 파혼(0.1%→0.3%), 부양(1.1%→1.3%), 친양자(0.5%→0.9%),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타에 관한 상담이 0.4%로 가장 많았다.

본부의 법률상담 5,679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317건(23.2%), 전화상담 4,090건(72.0%), 통신 및 인터넷상담 270건(4.7%), 서신 2건(0.1%)이었다.

## 2016년 1월 본부 상담 통계

| 총상담 5,887 | | | |
|---|---|---|---|
| 법률상담 (5,381)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지상 |
| 1,373 | 3,756 | 251 | 1 |
| 화해조정 | 소장 등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317 | 154 | 35 | |

* 2016/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24,887건

| 지 부 | 총상담 | 법률상담 | | | | | | 화해조정 | 소장 등 서류작성 | 소송구조 |
|---|---|---|---|---|---|---|---|---|---|---|
| | | 면접 | 전화 | 통신 | 서신 | 기타 | 합계 | | | |
| 서울(본부) | 6,321 | 1,317 | 4,090 | 270 | 2 | | 5,679 | 357 | 198 | 87 |
| 강 릉 (033) 652-9555 | 68 | 42 | 24 | | | | 66 | 1 | 1 | |
| 거 제 (055) 633-7636 | 122 | 97 | 20 | | | | 117 | | 5 | |
| 광 주 (062) 672-6011 | 32 | 11 | 21 | | | | 32 | | | |
|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 246 | 72 | 58 | | | | 130 | 115 | 1 | |
| 군 산 (063) 442-1560 | 125 | 42 | 79 | | | | 121 | 3 | | 1 |
| 대 구 (053) 745-4501 | 679 | 215 | 53 | 3 | | 출장 268 | 539 | 140 | | |
| 대 전 (042) 520-5258 | 280 | 51 | 227 | 1 | | | 279 | | 1 | |
| 제 주 (064) 753-9421 | 437 | 143 | 121 | | | | 264 | 173 | | |
| 동 해 (033) 535-0188 | 86 | 15 | 71 | | | | 86 | | | |
| 목 포 (061) 273-2514 | 109 | | 101 | 1 | | 출장 1 | 103 | 5 | 1 | |
| 부 천 (032) 667-2314 | 202 | 56 | 124 | | | | 180 | 22 | | |
| 성 남 (031) 707-6661 | 289 | 141 | 77 | 3 | | | 221 | 64 | 4 | |
| 수 원 (031) 243-4600 | 375 | 136 | 163 | | | 출장 63 | 362 | 10 | 2 | 1 |
| 순 천 (061) 753-9910 | 181 | 84 | 89 | | | | 173 | 8 | | |
| 중 구 (02)2238-6554 | 335 | 283 | 52 | | | | 335 | | | |
| 안 동 (054) 856-4200 | 77 | 8 | 39 | | | | 47 | 30 | | |
| 울 산 (052) 246-9568 | 100 | 40 | 60 | | | | 100 | | | |
| 익 산 (063) 851-5113 | 231 | 62 | 164 | | | 출장 5 | 231 | | | |
| 인 천 (032) 865-1120 | 352 | 123 | 198 | | | | 321 | 14 | 13 | 4 |
| 전 주 (063) 244-2930 | 297 | 163 | 105 | 2 | 16 | | 286 | 5 | 4 | 2 |
| 정 읍 (063) 535-3705 | 101 | 47 | 48 | | | | 95 | 4 | | 2 |
| 진 주 (055) 746-7975 | 147 | 40 | 71 | | | | 111 | 28 | 4 | 4 |
| 창원 · 마산 (055) 261-0280 | 252 | 215 | 31 | 5 | | | 251 | | 1 | |
| 청 주 (043) 257-0088 | 174 | 70 | 56 | 2 | | | 128 | 41 | 5 | |
| 춘 천 (033) 257-4688 | 188 | 39 | 69 | | | 출장 80 | 188 | | | |
| 태 백 (033) 554-4004 | 106 | 42 | 22 | | | 출장 42 | 106 | | | |
| 평택 · 안성 (031) 611-4251 | 151 | 71 | 58 | | | | 129 | 8 | 14 | |
| 제 천 (043) 644-5690 | 72 | 20 | 52 | | | | 72 | | | |
| 포 항 (054) 283-7555 | 84 | 19 | 65 | | | | 84 | | | |
| 지부총상담 | 5,898 | 2,347 | 2,318 | 17 | 16 | 출장 459 | 5,157 | 671 | 56 | 14 |
| 총 상담 | 12,219 | 3,664 | 6,408 | 287 | 18 | 출장 459 | 10,836 | 1,028 | 254 | 101 |

**2015/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280,170건

좋은 책

# 도올의 중국일기

김용옥 지음
통나무, 2015

언제부터인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크게 불편하다. 오래 전부터 한국의 코미디는 도둑과 거지만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주로 여성의 외모, 체격 혹은 성소수자들을  소재로 삼아 거의 조롱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더 없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엔가는 조선족의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저 따라 웃다가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인터넷 뉴스의 댓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문화 가정, 조선족, 특히 유색인종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롱과 반감으로 넘쳐나는 사이버 세상에서 아득한 공포를 느낄 때도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는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 아울러 통일 이후를 걱정한다. 한국사람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인으로 알아왔던 이들과 조금은 다른 외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통일 이후 대체로 경제적 약자가 많을 북한 출신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간주하는 사회가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끔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아무권이나 빼서 다시 읽을 때가 있다. 경남 하동의 평사리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격류에 휩쓸려 간도로 떠나간 사람들, 주인공 서희와 많은 이들이 진주 등으로  돌아 왔지만 연길에, 용정에 그리고 하얼빈에 이르기까지 머물거나 떠돌았던 많은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경상도, 전라도 어디의 농부였거나 그들의 자손인 것이다. 그들이 바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의 조선족이며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어디의 고려인인 것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도올의 중국일기」를 읽고 있다. 모두 6권으로 나올 예정이라는데 현재 5권까지 발행되었으며 나는 3권을 읽는 중이다. 이 책은 도올이 2014년 가을 한 학기 동안 중국 연변자치주의 문화적 중심인 연변대학에서 객좌교수로서 강의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일기형태로 쓴 것이다. 1권에는 중국어로 강의를 하며 느낀 중국사회와 연변자치구의 일상적 모습을 주로 담았고 2권과 3권은 고구려패러다임, 고구려재즈라는 부제에서 보여주듯 일대의 고구려 유적 탐방을 통해 느낀 역사적 감상이 주를 이룬다.

간도로 떠났던 조선인들이 항일운동과 중국 혁명의 과정에서 주덕해라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연변조선민족자치구를 이루게 되는 과정 그리고 사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의 눈으로 본 통일신라라는 틀에 갇혀  잃어버렸던 고구려와 동북아시아의 눈부신 문명사를 대략이나마 그려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것이 "일체의 영토적 혹은 정체적 담론이 아니라 무형의 과거 역사자산에 관한 자유로운 담론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되었다.

3권의 앞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대륙의 아래 부분에 한반도가 위치한 지도가 아니라 대륙을 아래에 놓고 한반도가 위에 놓인 형태의 지도가 실려 있는데 방향만 바꿔놓은 지도 한 장으로 엄청난 사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놀랐다.

책날개에 소개한대로 도올 김용옥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

이 숙 현 편집부장

# 2016년
# 2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2/8 설연휴로 휴강)
▶ 강사 : 김명순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일정 및 강의주제

| 일시 | 강의제목 |
|---|---|
| 2월 25일(목) | 뇌의 속성과 다름 |
| 3월 24일(목) | 마음의 구성과 감정 |
| 4월 28일(목) | 관계의 뇌와 사랑 |
| 5월 26일(목) | 분노의 의미와 기능 |
| 6월 23일(목) |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
| 7월 28일(목) |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
| 9월 22일(목) |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
| 10월 27일(목) |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
| 11월 24일(목) | 외도의 유형과 대처 |
| 12월 22일(목) |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I)

#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일시** 2016년 3월 25일(금) 오후 2시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

**발표**

- 고경순 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권양희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 정윤경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